

	<h2 style="margin: 0;">직 제 규 정</h2>	규정번호	3-1-02
		제정일자	2013. 4. 11.
		개정일자	2026. 3. 1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경민학원 정관 및 경민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’ 이라 한다) 학칙에 의거 본 대학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 대학의 직제에 관하여 법령, 정관 및 학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사무분장)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2 장 편 제

제4조(총장)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하며, 학생을 지도하고 본 대학을 대표한다.

제5조(부총장) ① 본 대학에 총장을 보좌하는 부총장을 둔다.

② 부총장은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담당하고 총장을 보좌하며, 총장 유고시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총장의 유고시에는 부총장, 교무학생처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제6조(기구) ① 본 대학에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학과를 두며, 총장 직속기관으로 혁신지원 JOY사업단, RISE사업단, 지산학사업단, AI·DX사업단, 전문기술석사교육원, 대외협력단, 부속실을 두고, 대학본부에는 교무학생처, 행정지원처, 입학홍보처, 온다입학지원처, 산학기획처를 둔다.

② 부설기관으로, 미래평생교육대학, 국제교육원을 두며, 부설교육기관으로 경민대학교부설유치원(이하 “유치원” 이라 한다)을 둔다.

③ 부설연구기관으로 가구산업개발원을 둔다.

④ 부속기관으로 정보도서관, 교목실, 대학인권센터 및 경민현대미술관을 둔다.

⑤ 독립기구로 산학협력단을 둔다.

제7조(정원) 본 대학 교직원의 정원은 관련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8조(교직원) ① 본 대학에는 다음의 각 호의 교직원을 둔다.

1. 교원: 교수, 부교수, 조교수

2. 직원: 일반직, 기술직, 무기계약직, 계약직, 조교

② 제1항의 교직원 외에 필요시 겸임교원, 초빙교원, 석좌교수, 명예교수, 특임교수, 시간강사 등을 둘 수 있다.

제 3 장 직속기관

제9조(직속기관) ① 총장 직속기관으로 혁신지원JOY사업단, RISE사업단, 지산학사업단, AI·DX사업단,

전문기술석사교육원, 대외협력단, 부속실을 둔다.

- ② 혁신지원JOY사업단, RISE사업단, 지산학사업단, AI·DX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해 단장과 책임교수, 사업팀장을 둘 수 있으며, 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.
- ③ 전문기술석사교육원을 운영하기 위해 원장을 두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

제 4 장 대학본부

제10조(대학본부) ① 대학본부에는 교무학생처, 행정지원처, 산학기획처, 입학홍보처, 온다입학지원처를 둔다.

- ② 교무학생처, 산학기획처, 입학홍보처, 온다입학지원처의 처장 및 실장은 조교수(계약제)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
- ③ 행정지원처장은 직원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

제11조(교무학생처) ① 교무학생처에는 교무학사, 수업학적, 학생원스톱서비스센터, 전산정보팀, 장애학생지원센터, 미래교육혁신센터, ESG봉사센터, AID 교수학습지원센터, 예림상담센터, 진로심리개발센터를 둔다.

- ② 부(과)장 및 계장, 파트장은 직원으로 보하고, 센터장 및 원장은 교원으로 보한다.

제12조(행정지원처) ① 행정지원처에는 총무회계, 시설관리를 둔다

- ② 부(과)장 및 계장은 직원으로 보한다.

제13조(입학홍보처) ① 입학홍보처에는 입학홍보, KM미디어홍보국을 둔다.

- ② 부(과)장 및 계장은 직원으로 보하고, 센터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.

제14조(온다입학지원처) ① 온다입학지원처에는 대외입학지원, 성인학습지원센터를 둔다.

- ② 부(과)장 및 계장은 직원으로 보하고, 센터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.

제15조(산학기획처) ① 산학기획처에는 산학기획, 재정관리파트, HR인사파트, 성과관리파트, 성과지표관리센터, job-ara센터, 취.창업일자리센터, 현장실습지원센터, 가족회사관리지원센터, 지산학협업센터, KM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둔다.

- ② 부(과)장 및 계장, 파트장은 직원으로 보하고, 센터장은 교원 및 직원으로 보한다. 다만, 창업교육센터장은 산학기획처장이 겸보할 수 있다.
- ③ 창업교육센터, AI.신기술융복합지원센터 및 가족회사관리지원센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5 장 부설기관

제16조(부설기관) ① 부설기관에는 미래평생교육대학, 국제교육원을 둔다.

- ② 부설기관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7조(미래평생교육대학) ① 지역사회 및 기관단체의 평생교육 및 특별교육 지원, 특별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미래평생교육대학을 둔다.

- ② 미래평생교육대학에는 학장을 두며,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
- ③ 미래평생교육대학에는 평생교육원 및 골프아카데미를 둔다.
- ④ 평생교육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, 부원장, 부(과)장, 계장은 직원으로 보한다.

제18조(국제교육원) ① 국제교류 사업, 유학생 유치 및 파견, 재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교육과 한국어학당, 특별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국제교육원을 둔다.

- ② 국제교육원에는 원장을 두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
- 제19조(유치원) ① 교직원의 후생복지,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지원 및 지역 사회 봉사를 위하여 유치원을 둔다.
- ② 유치원에는 원장을 두며, 교원으로 보한다.

제 6 장 부설연구기관

- 제20조(부설연구기관) ① 본 대학에는 필요한 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.
- ② 연구기관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7 장 부속기관

- 제21조(부속기관) ① 부속기관으로 정보도서관, 교목실, 대학인권센터, 경민현대미술관을 둔다.
- ② 부속기관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제22조(정보도서관) ① 도서와 자료의 수집, 교직원 및 학생의 학술활동과 면학지원을 위해 정보도서관을 둔다.
- ② 정보도서관에는 관장을 두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
- ③ 정보도서관에는 도서관운영을 두며, 부(과)장 및 계장은 직원으로 보한다.
- 제23조(교목실) ① 교직원과 학생의 신앙과 선교 및 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목실을 둔다.
- ② 교목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
- 제24조(인권센터) 인권센터는 인권센터장을 두며, 조교수(계약제)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
- 제25조(경민현대미술관) ① 현대미술 위주의 작품 전시·기획·대관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민현대미술관을 둔다.
- ② 현대미술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

제 8 장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

- 제26조(산학협력단) ①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둔다.
- ② 산학협력단에는 창업보육센터 및 위탁사업기관, 학교기업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교원으로 보하고 창업보육센터장은 산학협력단장이 겸보할 수 있다.
- ③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제27조(학교기업) ① 산업교육 진흥 및 학생 현장실습 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목표 달성과 수익창출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.
- ② 학교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9 장 학 과

- 제16조(학과) ① 각 학과 운영을 위해 학과장을 두며, 교원으로 보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

있다. 단, 인증평가를 받는 학과의 경우 부학과장을 둘 수 있다.

② 각 학과에는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10 장 위 원 회

제28조(위원회) ① 본 대학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「직제규정」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직제개편 적용례) 본 규정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직제개편으로 전면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직제개편 적용례) 본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직제개편으로 전면개정하여 시행한다.